

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-343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8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므로서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진료,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질병관리,기타지역주민의보건의료향상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조)
- 나.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(안 제2조)
- 다. 보건소장은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함 (안 제3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대행 및 경비)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업무중 영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쌍방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,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(이하 “업무대행비”라 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.

제3조 (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